

2025.12.10.

수신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참조 : 상임감사

제목 : 감사 청구(회장의 정관 위배 등에 대한 감사)

1. 근거

정관 제3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4항, 제6항 등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정관 제32조(임원 직무) 제1항 및 제2항의 ‘성실 의무 위반 및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손해(가치·명예 훼손 등)’를 발생하게 하였는 바, ‘임직원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제33조 제1항 제2호)를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3. 정관 제3조(목적)의 ‘위대한 민주정신’ 훼손(=내란동조 반민주 세력과 회동),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위배 사항 등 아래 4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 청구의 구체적 내용

별지 ‘첨부’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실정법 위배에 대하여는 의율(擬律)조치되도록 처리하시고, 우리 정관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퇴해야 할 중대한 사유(12가지)

○ 감사 청구인 : 강 원(유족회원) / 010- 3211- 06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608호(여의도, 삼도오피스텔608호)

## [첨부] : 사퇴해야 할 중대한 사유(12가지)

### ○ 내란동조 세력 장동혁과의 비공개 회동

#### ▶ 유족회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배신

1. 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여 정관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2. 5·18 관련 단체 및 민주시민 전체가 밝힌 단호한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3.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유족회의 도덕성과 대표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 ○ ‘매일경제(11.7)’ 보도

#### ▶ 공법단체장의 정치 행위 및 사전 회동 의혹

4. 장동혁과 회동 후 언론에 “누구도 5·18 참배를 막아선 안 된다” 라며, 공법단체장으로서 취해선 안 될 정치적 발언 · 정치 행위를 서슴지 않아 정관을 다시 한번 위반하였고,
5. 기사 하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양 회장이 이미 장동혁 일행과 사전 회동을 약정했다는 의혹이 매우 짙으며, 이는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라 유족회원 전체를 기만한 행위이다.

(매일경제 기사 중/하단)

[~ ~ “특히 양 회장과의 간담회는 6일 오후 1시 30분에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 회장이 최근 낙상사고로 갈비뼈 부상을 당해 입원하게 되면서 취소됐다. 병원 측에서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당초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던 장 대표의 5·18 민주묘지 참배를 30분 앞당겨 1시 30분에 진행하기도 했다.” ~~]

○ 지부 비리에 대한 회장의 방관 ▶ 관리감독책임 포기

6. 각 지부의 중대한 비리에 대해 3주 동안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하여 정관 제8조(감독)을 위반하였고,
7. 국가보훈부의 특별감사라는 중대 사태를 야기했으며,
8. 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보복성 인사) 등 여러 국가 기관의 동시 조사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유족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 직권남용 및 정관 위배 ▶ 사무총장 직무배제 사태

9. 총회 선임 이사이자 임원인 사무총장을 이사회 의사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배제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개입하는 사태(11.12)로 이어져 결국 11월 17일 직무배제 조치가 철회되는 굴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 지부 비리의 빈발 ▶ 최고 책임자의 무능과 직무유기

10. 전남 및 서울지부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착취,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의 비리는 지부 차원 문제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회장의 명백한 관리 · 감독 실패이자 직무유기이다.

○ 내란세력과의 접촉 후 거짓 해명 ▶ 대표자로서의 자격 상실

11. 내란세력과의 회동 사실을 알고 회원들이 뒤늦게 항의를 하자, 양

회장은 “장동혁 일행이 일방적으로 방문했었다”고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하였고, 이는 대표자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12. 평소에도 불성실 근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행태는 회원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유족회를 총체적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거듭된 허위 해명으로 이미 단체장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 ○ 결론

### 가. 감사 청구 내용

▶ 회장의 정관 위배, 직권남용, 하급조직에 대해 지도·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소 결 : 더 이상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상기의 열거한 사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법단체 대표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고, 5·18 유족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추락시킨 중대한 위법 · 일탈 행위들이다.

또한 유족회를 사유화하고, 공사(公私) 구분조차 없이 운영하여 유족회원 전체의 명예를 짓밟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월영령 앞에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유족회원 전체의 정당한 명령이다 !

끝.